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8. 4.
발 의 자 : 신영은 의원
(찬성자 17인)

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가. 인천광역시는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(경인공단)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음.
- 나. 지역적으로 서해에 위치하여 168개 유·무인의 섬으로 구성된 특성으로 일찌감치 항만도시로 발전하였고,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는 전 세계 58개국 182개 도시를 88개의 항공사가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,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망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.
- 다. 국방상으로는 서해 접경지역에 위치한 안보의 요충지이며 특히,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, 2011년 12월 이후 북한 김정은 권력체제 전환에 따른 불안정한 남북정세로 인하여 지역 안보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음.

- 라. 사회·경제적으로는 송도·청라·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, GCF) 사무국, 세계은행(World Bank)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고 외국인 5만 3천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, 외형적으로도 지난 7월 10일에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(NEATT)가 준공되는 등 첨단시설의 초고층 빌딩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.
- 마. 또한,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7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9,407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송도 LNG 인수기지, 영흥화력을 비롯한 5개소의 화력발전시설이 입지하여 수도권의 에너지원으로서 한국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.
- 바. 그러나,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정부와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, 윤리의식의 부재, 민관유착 및 금전만능주의 팽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관리 및 대응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
- 사. 더구나,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붕괴사고, 5월 2일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,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등 많은 사건,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항만, 항공, 에너지, 물류, 교통, 산업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원도심이 산재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·증폭되고 있음.
- 아. 안전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천광역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

분야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.

자.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 분야, 산업·경제 분야, 건설·교통 분야, 도시개발 분야, 항만·공항·해양 분야, 소방·재해·재난 분야 등 각 유관한 영역을 포괄하여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
 - ※ 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능
- 구성인원 : 13인 이내
- 활동내용
 - 자연·인적·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
 -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
 -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정책·제도개선 모색
 - 안전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
 -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 정부·국회 제도정비 건의

4. 대상부서

- 안전행정국, 경제수도추진본부, 건설교통국, 도시계획국, 항만공항해양국, 소방안전본부, 도시철도건설본부, 종합건설본부, 인천광역시교육청
 - ※ 특별위원회 구성후 대상부서 최종 결정

5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6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